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가이드북



국민권익위원회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목차

I. ISO 37001(2016)의 제정 배경	5
1. 국제표준화기구, ISO 37001(2016) 제정	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사용지침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1-1. 국가기술표준원, KS A ISO 37001(2016) 제정	9
2. 부패방지법규 양벌규정의 면책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요구	10
2-1. 미국 FCPA, 효과적인 법규준수 이행 요건	11
2-2. 영국 뇌물법, 효과적인 법규준수 이행 요건	13
2-3. 한국 청탁금지법,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요건	15
II.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의 이해	19
1. 개요	20
2. 구성	24
3. 적용 범위와 규범적 특징	26
4. 용어와 정의	27
5. 요구사항	32
(1) 조직상황	32
(2) 리더십	36
(3) 기획	42
(4) 지원	44
(5) 운용	50
(6) 성과평가	57
(7) 개선	62

III. ISO 37001(2016) 이행효과와 인증리스크	65
1. ISO 37001(2016) 이행 효과	66
2. ISO 37001(2016) 이행을 위한 자가분석(GAP) <예시>	67
3. ISO 37001(2016) 인증리스크	73

참고: ISO 37001(2016) 관련 법규범 개관	75
1. 개요	76
2.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77
3. OECD, 뇌물방지협약	84
4. UN, 반부패협약	87
5. G20, 2010년 반부패행동계획 채택과 2017~2018 반부패행동계획서 승인	88
6. 영국, 뇌물법(2010)과 이행지침서	89
7. 영국 표준화 기구(BSI), BS 10500(2011) 가이드라인	91
8. 한국, 청탁금지법	93
9.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반부패 가이드	94

부록: 참고문헌	95
1. ISO 37001(2016) 참고문헌	96

I.

ISO 37001(2016)의 제정 배경



1. 국제표준화기구, ISO 37001(2016) 제정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사용지침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1-1. 국가기술표준원, KS A ISO 37001(2016) 제정

2. 부패방지법규 양벌규정의 면책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요구

2-1. 미국 FCPA, 효과적인 법규준수 이행 요건

2-2. 영국 뇌물법, 효과적인 법규준수 이행 요건

2-3. 한국 청탁금지법,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요건

국제표준화기구 ISO 37001(2016) 제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사용지침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영국의 BS 10500을 토대로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표준 가이드라인 「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FCPA와 영국의 뇌물법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양벌규정'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범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ISO는 2016년 10월 국제사회의 공동의 합의를 얻어 ISO 37001(2016)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채택·공표하였다.

이 표준은 조직이 부패방지를 위한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부패는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기에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널리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부패로 인한 의사결정의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부패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지침'의 활용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 관련 행위 방지를 통한 반부패 기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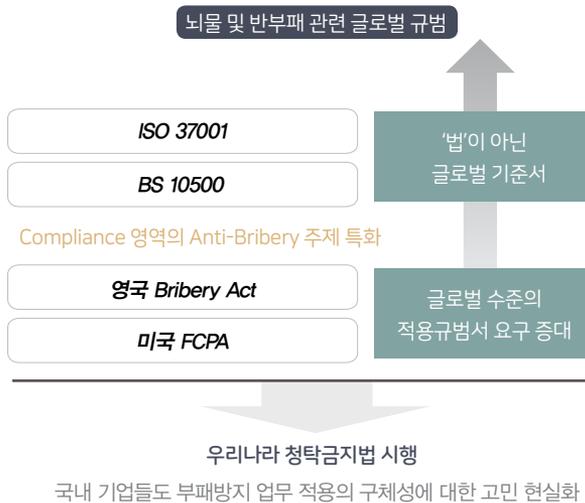
표 ISO 37001(2016) 제정 배경

환경변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요구수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용
기업윤리 및 법규준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기대치 변화	강화된 준법경영은 외부환경 변화에 기본적·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되고 있음. 특히, ISO 37001 요구사항 준수를 통해 준법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확보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규제 감독 당국의 강화된 제재 수위(양벌규정 적용 강화 등)	규제 감독 당국의 강화된 규제 리더십에 대응 및 경쟁업체 견제 수단이 되고 있음
점차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각국 및 국제기구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권고	점차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뇌물 및 부패위험에 노출된 영역이 증대됨에 따라, 특화된 주제(뇌물 및 부패이슈 등) 영역은 기존의 기본적인 법규준수를 넘어선 (위험도를 감안한) 비례원칙 측면에서의 업무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음
글로벌 경영의 보편화에 따른 역외적용원칙의 필요성	
강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실행력의 요구	형식적인 요건 수준에 맞춘 '법규준수'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력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규범준수' 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기업들이 선연적인 법규범보다는 조화로운 경영시스템적 접근법을 실무적으로 요구	가이드라인에서 실행력 있는 준법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적 형식과 소프트웨어적 구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내재화된 자체 경영시스템에 반영

표 글로벌 뇌물 및 반부패 관련 주요 법규범 발전 연혁 (내림차순)

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1977)
2. OECD, 뇌물방지협약(1997)
3. UN, 반부패협약(2003)
4. G20, 2010년 반부패행동계획 채택과 2017~2018 반부패행동계획서 승인
5. 영국, 뇌물법(2010) 과 이행지침(2011)
6. 영국표준화기구(BSI), BS 10500(2011) ABMS 가이드라인
7. 부패방지법규 양벌규정 적용의 구체적 기준 제시에 대한 요구
8. 국제표준화기구(ISO), ISO 37001(2016) ABMS 가이드라인
9. 한국, 청탁금지법(2016.9)
10.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반부패 가이드(2016.12)
11. 국가기술표준원, KS A ISO 37001(2016)(2017.11)

그림 ISO 37001(2016) 제정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 해외법규 및 가이드라인(요약)



1-1. 국가기술표준원, KS A ISO 37001(2016)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17년 11월 ISO 37001(2016)을 KS 표준화하여 KS A ISO 37001(2016)을 제정하였다. ISO 37001의 KS 표준화 작업은 ISO 37001(2016)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국문화하여 공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법규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ISO 37001(2016)이 KS 표준화가 됨으로써,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 관련 감독 당국과 사법부, 그리고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 관련 법규의 이행 의무가 있는 영리기관은 각 기관의 업무 목적에 따라 KS A ISO 37001(2016)을 적극적으로 검토·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의 II 와 III 단원에서는 ISO 37001 KS 표준화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ISO 37001(2016) KS에서는 'Bribery'를 '부패/뇌물'로 번역하였다.

부패방지법규 양벌규정의 면책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요구

서구 선진국의 뇌물·반부패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청탁금지법과 일정 영역에서 겹친다. 특히, 뇌물·반부패 관련 법규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관련하여 영미권의 감독 당국과 사법부가 제시하는 면책기준 및 효과적인 법규준수 이행 요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FCPA와 영국의 뇌물법 등은 법규위반 사항이 발생한 기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반부패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주의에 따른 감독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인정하고 양벌규정의 면책, 행정제재 및 벌금 등의 제재위험을 크게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미국 FCPA상의 효과적인 법규준수 이행 요건

미국의 경우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된다. 즉, 단순히 형식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절차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가 큰 관건이 된다. 미국 FCPA의 양벌규정 미적용 관련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미 FCPA 법규상의 효과적인 준수 요건

1. 임원 등의 상층부에서부터 부패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및 정책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습득시킬 것
3.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는 등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에 투입할 것
4.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5. 전사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
6. 회사 구성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향상 혹은 부패행위 적발 등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구비함과 동시에 부패행위 관련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등을 구비할 것
7. 의심되는 부패행위 적발 시 보복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적인 고발이나 보고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구비해야 하며, 내부고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은폐하지 않고 철저하고 효과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것

미 법무부는 기업에 대한 연방기소원칙(The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of Business Organizations)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기업에 금전적 제재를 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FCPA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9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표 미 법무부의 FCPA관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9가지 요소

1. 부패행위의 본질적 심각성 (공공 부분에 미친 피해의 정도)
2. 부패행위가 해당 기업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정도
3. 해당 기업이 과거에 유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가의 여부
4. 범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시인과 조사에의 협조 여부
5. 기업이 기존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의 효과성 정도
6. 부패 척결을 위한 기업의 개선노력(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시행 및 개선, 경영진 교체, 부패행위의 근절, 해당 정부 기관과의 협력 등)의 정도
7. 기소가 기업의 부차적인 대상(주주, 연금가입자, 종업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
8. 기업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기소의 여부
9. 민사집행이나 규제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의 여부



2-2. 영국 뇌물법, 효과적인 법규준수 이행 요건

영국 뇌물법의 경우 영리조직의 임직원, 에이전트(agent), 자회사 등 관계자가 그 영리조직을 위해 사업을 획득하거나 사업과정에 유리한 혜택을 얻을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영리조직에 대해 형사책임이 부과되나, 영리조직이 관계자의 뇌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adequate procedures)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 가능하게 된다.

표 영국, 뇌물법 제7조(영리단체의 뇌물예방 불이행)	
<p>1. A relevant commercial organization (“C”) is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f a person (“A”) associated with C bribes another person intending—</p> <p>(a)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for C, or</p> <p>(b) to obtain or retain an advantage in the conduct of business for C.</p> <p>2. But it is a defence for C to prove that C had in place adequate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persons associated with C from undertaking such conduct.</p>	<p>1. 관련 영리단체와 관계있는 자(관계자)가 다음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본 조에 따라 영리단체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p>(a) 영리단체의 사업 획득 또는 유지, 또는</p> <p>(b) 영리단체를 위한 사업의 수행에 있어 이익의 획득 또는 유지</p> <p>2. 그러나 영리단체는 자신과 관계있는 자의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항변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p>
<p>▶ 영리조직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 관계자가 뇌물 제공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조직이 그러한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관련 개인의 처벌과 별개로 조직은 면책될 수 있음</p>	

영국 법무부는 뇌물법 제9조(영리단체의 뇌물제공 예방을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뇌물법 이행지침(The Bribery Act 2010 Guidance)』으로 공표하였다.

이행지침에서 뇌물 예방의 법적 의무를 가지는 기업들이 입증해야 할 '6가지 이행 원칙'은 해당 기관 내 전반에서 뇌물 예방을 위한 실행체계와 절차를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Bribery Act, 6개 Compliance 이행 원칙
1. 비례 원칙
2. 경영진의 반부패 의지 표명
3. 위험의 평가
4. 상당한 주의 의무
5. 의사소통
6. 감독과 검토

1. 비례원칙(Proportionate procedures)

영리조직은 당면한 뇌물수수 위험과 업무영역의 성격,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는 뇌물방지 정책과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는 원칙

2. 경영진의 뇌물방지 관련 의지 표명(Top-level commitment)

영리조직의 최고위층이 뇌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3.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영리조직은 자신이 노출된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의 뇌물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원칙

4.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영리조직은 뇌물수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 혹은 자신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5. 의사소통(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영리조직은 자신의 뇌물방지 관련 정책과 절차가 조직 전반에 스며들고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전파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원칙

6. 감독과 검토(Monitoring and review)

영리조직은 자신의 뇌물수수 방지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

2-3. 한국 청탁금지법,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요건

우리나라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서 위반 행위 <아래 표 참조> 를 한 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자(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도 함께 제재할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누구든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수행사인도 포함)

양벌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기관의 거대화에 따른 분산된 운영과 의사결정, 복잡한 재무구조 및 회계 관행 등에 비추어 기관/법인/대표자/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벌의 책임주의에 따라 임직원의 위반행위 방지 관련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표 양벌규정 관련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 대상직무

1	2	3	4	5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청탁금지법 제23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 또는 그 임직원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대표자/기관장/법인 등을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은 제외된다.
- ▶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이 관건이 되는데, 해당 사업주/기관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대표자/기관장/법인(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다 해야 하는지가 큰 쟁점사항이 된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는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나, 소속 공공기관의 지위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이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행위자 개인에게만 부과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의 일부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11. 2008도6530 판결)

표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청탁금지법상 사업주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의 판단 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 필요하다.

참고로, 다른 법령상의 양벌규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위·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따라서 뇌물방지 및 반부패 관련 법규준수를 기업 및 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의 이행 여부 판단에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ISO 37001(2016)의 이해



1. 개요
2. 구성
3. 적용 범위와 규범적 특징
4. 용어와 정의
5. 요구사항
 - (1) 조직상황
 - (2) 리더십
 - (3) 기획
 - (4) 지원
 - (5) 운용
 - (6) 성과평가
 - (7) 개선

출처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A ISO 37001:2016

ISO 37001(2016)은 모든 영리기업/기관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뇌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절차 및 통제시스템의 규범적인 글로벌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지며, 공공 또는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 섹터 등 어떤 형태의 조직이나 중소 및 대규모 조직 등 어떤 규모의 조직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되었다.

표 ISO 37001(2016) 개요

- 모든 국가 혹은 다른 사법지역(관할권역)의 모든 기업/기관/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모범규준
- 부패 위험을 영역별/부서별/(임)직원별 위험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식/절차/통제 프로세스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일반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의 통합 하에 운용할 수 있음
 - ISO 37001은 사기, 카르텔, 독과점, 자금세탁이나 기타 부패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기업/기관/조직이 이러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컴플라이언스관련 ISO 기준서들[예: 컴플라이언스(ISO 19600:2014,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사회적 책임 활동(ISO 26000:201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리스크관리(ISO 31000:2009,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등]과의 연계성과 범용성 확보

ISO 37001(2016)은 세부 이행사항들을 요구사항 (shall, 해야 한다) 과 권고사항 (should,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시키거나 또는 설명하기 위한 부속서(또는 주석서) 성격의 지침(guidance)'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기술의 특징: 이행사항의 수준을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속서상의) 지침 등으로 차등화

표 ISO 37001(2016) 주요 내용

- 반부패 방침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 모든 관련 직원 및 조직(파트너, 협력업체, 공급업체, 컨설턴트 등)에게 정책 및 프로그램 알리기
-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준법감시 관리자의 임명
- 임직원 대상의 적절한 뇌물/부패방지 관련 정책 및 교육
- 뇌물수수 및 부패 위험성 평가
- 임직원의 부패/뇌물방지 정책의 준수 여부 확인
- 선물·접대·기부 관련 통제활동
- 보고절차 및 내부신고 이행



※ PDCA 모델을 준용한 ISO 37001 (2016)

ISO 37001(2016)은 제목(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사용지침: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 등을 PDCA 모델에 따라 이행 기관에게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ISO 37001(2016)은 요구사항의 체계적인 반영을 위해 경영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PDCA 모형을 사용해서 이행사항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적용한다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Plan, 계획 단계]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계획을 위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 부패방지에 관한 방침의 제정, 실행을 위한 자원의 배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을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Do, 실행 단계]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방침을 채택하고 경영시스템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부패방지 방침과 체계에 관한 내부 의사소통, 부패방지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부패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분담, 부패 위험성 평가, 내부 신고 절차 마련 그리고 조직 내·외부 업무 전반에 걸친 활동 관리 등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Check, 평가 단계]에서는 일상 업무에 대한 부패방지 준수 수준의 검토와 함께 내부 심사 등의 활동을 통한 부패방지 수준 평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최고경영진 및 지배기구에게 보고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Act, 개선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에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ISO 37001(2016)은 [그림]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있다. 조문별로 이행사항들을 요구사항(shall, 해야 한다)과 부속서의 지침(guidance)으로 그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시키거나 또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요구사항 아닌 경우에는 권고사항(should,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이행 수준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행사항 수준의 차등화: 요구사항과 (부속서상의) 지침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기술

그림 ISO 37001(2016) 구성

	개요		8.1 운용 기획 및 관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8.2 실사(due diligence)		
	1. 적용범위		8.3 재무적 관리		
	2. 인용표준		8.4 비재무적 관리		
	3. 용어와 정의		8.5 통제받는 조직과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방지 관리 실행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행 위 요 구	8.6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8.7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4.3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8.8 부패방지 관리의 불충분에 대한 관리		
	4.4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8.9 문제/우려사항 제기		
	4.5 부패리스크 평가		8.10 부패의 조사 및 조치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5.2 부패방지 방침			9.2 내부심사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9.3 경영검토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10. 개선	9.4 부패방지 책임자 검토
	6.2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7. 지원	7.1 자원			10.2 지속적 개선	
	7.2 역량/적격성		부속서 A(참고) 이 표준의 사용을 위한 지침		
	7.3 인식과 교육훈련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특히, 「부속서(또는 주석서)」는 ISO 37001(2016)의 조문별 요구사항의 세부적인 설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요구사항의 실행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 또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다만, 부속서 일반사항(A.1)에서 “부속서의 목적은 조직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실행할 때 특정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예시한 것이다. 포괄적(종합적)이거나, 지시적(규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기준서의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부속서의 내용들을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실제 취해야 할 조치는 조직이 당면한 부패리스크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한 비례적인 조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표 부속서 A

- A.1 일반사항
- A.2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범위
- A.3 합리성 및 비례성
- A.4 부패리스크 평가
- A.5 지배기구와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 A.6 부패방지 준수기능/준수책임자
- A.7 자원
- A.8 고용 절차
- A.9 인식 및 교육훈련
- A.10 실사
- A.11 재무적 관리방법
- A.12 비재무적 관리방법
- A.13 통제조직 및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실행
- A.14 부패방지 의지표명
- A.15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 A.16 내부심사
- A.17 문서화된 정보
- A.18 부패조사 및 조치
- A.19 모니터링
- A.20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변경 기획 및 실행
- A.21 공직자
- A.22 부패방지 추진활동(initiative)

▶ 세부내용은 KS A ISO 37001:2016 참조

적용 범위와 규범적 특징

ISO 37001(2016)의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른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부패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해당 기관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지만,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해당 기관이 부패의 예방,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은 아래 [표]와 같이 8가지의 통제범위를 가진다. ISO 37001(2016)에 따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부패관행과 관련된 사기, 카르텔, 반독점(경쟁 위반), 분식회계 및 자금세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해당 기관은 이러한 행위들을 경영시스템의 범위에 포함하여 확장할 수 있다.

표 ISO 37001(2016)에 따른 부패/뇌물 적용범위

1. 공공,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의 부패(bribery)
2. 조직에 의한 부패
3. 조직을 대신(대표)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한 조직 인원의 부패
4. 조직을 대신(대표)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
5. 조직의 부패
6.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직 인원의 부패
7. 조직의 활동에 관련하여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
8. 직접 및 간접적 부패(예: 제3자를 통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되거나 수락한 뇌물(bribe))

ISO 37001(2016)은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소규모,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직면한 부패리스크는 조직의 규모, 조직이 운영하는 지역 및 부문, 조직 활동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ISO 37001(2016)은 해당 기관이 직면한 부패리스크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직의 방침, 절차 및 관리에 따라 실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부속서 A.2 / A.8.4 참조 (KS A ISO 37001:2016)

용어와 정의

부패/뇌물 (bribery)	<p>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의 직무 수행에 관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유인이나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장소에 관계없이 과도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안, 약속, 제공, 수락 또는 요청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라는 용어는 해당 조직을 규율하는 부패방지법규와 해당 조직이 설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정의를 따른다. ※ 이 표준의 "부패"란 (조직상황)에서 (개선)까지의 요구사항에만 관련되어 적용되는 용어이다.
조직 (organization)	<p>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연인(개인) 또는 사람의 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개념은 개인사업자, 회사, 법인, 기업, 엔터프라이즈, 공사, 합자회사, 자선단체, 협회, 주식회사, 공공분야, 민간 분야를 포함하며 동시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운영 단위가 둘 이상인 조직의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영 단위를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stakeholder)	<p>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거나 하는 내외부의 사람(개인, 자연인) 및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는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다.
요구사항 (requirement)	<p>명시적이고 의무적인 요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묵시적 또는 의무적인 것으로 언급된 '요구(필요) 또는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묵시적"이란 묵시적으로 표현된 요구나 기대사항이 조직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관습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상의 "요구사항"의 핵심 정의는 "일반적으로 묵시되거나 의무적으로 명시되는 니즈 또는 기대"이다. ※ "일반적으로 묵시적인 요구사항"은 부패방지경영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규정된 요구사항은 명시된 것으로, 문서화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한, 상호관련 되는 또는 상호작용하는 조직 요소의 집합

- ※ 경영시스템은 단일 분야 또는 복수 분야를 다룰 수 있으며, 시스템의 요소에 조직의 구조 · 역할 · 책임 · 계획수립 · 운영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경영시스템의 범위에 조직 전체, 조직의 특수하거나 특정 기능들, 조직의 특수하거나 특정 분야 등이 포함된다.

최고경영자/최고경영진
(top management)

최고 계층에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룹

- ※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경영시스템의 범위가 조직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최고경영자는 해당 조직의 일부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조직은 조직이 활동하는 법적 제도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조직되며, 규모 및 분야에 따라 조직될 수도 있으며, 지배기구(governing body)와 집행기구를 모두 갖춘 조직도 있고, 책임이 여러 부서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조직도 있다. 조직과 책임 관련 이러한 차이는 ISO 37001(2016) 제5장(리더십)의 요구사항 이행시 다르게 고려하여 한다.

지배기구
(governing body)

조직의 활동, 지배구조(governance) 및 방침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최고경영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그룹 또는 기관

- ※ 모든 조직, 특히 소규모 조직에서 최고경영진과 별도로 구분된 지배기구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기구에는 이사회, 감독이사회, 신탁관리자, 감독기관(supervisory authority)과 같은 집단이나 단체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부패방지 준수기능/준수책임자
(anti-bribery compliance function)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에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사람(들)

효과성
(effectiveness)

계획한 활동이 실현되고, 계획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

방침 (policy)	최고경영자 또는 지배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조직의 의도 및 방향
목표 (objective)	<p>달성해야 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는 전략적·전술적·운영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목표는 재무, 보건, 안전, 환경 목표 등과 같은 규율 목표와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목표는 전략적으로/범조직적으로/프로젝트별/제품별/프로세스와 같이 다른 단계마다 설정할 수 있다. ※ 목표는 계획한 성과, 목적, 운영상의 척도(기준) 등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맥락에서의 부패방지 목표는 조직에 의해 수립되고, 부패방지 방침과 일관성이 있다.
리스크 (risk)	<p>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리스크는 부패 행위 및 부패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소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영향(효과)은 기대치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편차를 의미한다. 불확실성이란 어느 사건(사고) 및 그 결과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해 또는 지식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 또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말한다. 리스크는 종종 잠재적 사건과 사건의 결과 또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하여 특징지을 수 있고 리스크는 종종 사건의 결과(환경의 변화 포함)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조합하여 표현한다.
적격성 (competence)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
문서화된 정보 (documented information)	<p>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및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매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정보는 특정 형태와 매체, 그리고 출처(정보원)와 관계없이 모두 다 포함되며, 문서정보는 관련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경영시스템, 조직이 문서화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 기록 결과물의 증거로 언급할 수 있다.
프로세스 (process)	투입(input)을 산출(output)로 변환시키기 위해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성과 (performance)	<p>측정 가능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는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결과들과 관계된 것이며, 성과는 활동/프로세스/제품(서비스 포함)/시스템의 관리 또는 조직의 경영에 관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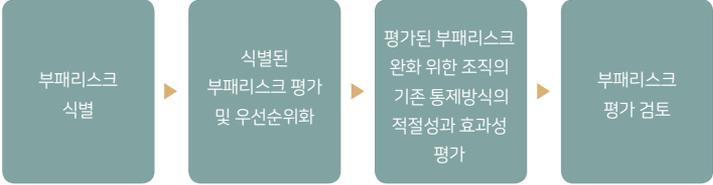
외주처리하다(동사) (outsource (verb))	외부조직의 기능 또는 프로세스의 일부분을 수행하도록 하다 ※ 외부에 위탁된 기능이나 과정이 경영시스템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외부조직이 조직의 경영시스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모니터링 (monitoring)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활동 상태를 결정 ※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확인, 감독 또는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측정 (measurement)	값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심사 (audit)	심사 증거를 확보하고 심사 기준의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독립적, 그리고 문서화된 프로세스 ※ 심사는 내부심사(제1차 당사자) 또는 외부심사(제2차 또는 제3차 당사자)로 실시될 수 있으며, 한 개 이상의 분야가 결합된 결합심사로 실시될 수도 있다. 내부심사는 조직 스스로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외부 당사자가 시행하기도 한다. 세부적인 “심사증거” 및 “심사기준” 등은 ISO 19011(적합성 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정의되어 있다.
적합 (conformity)	요구사항의 충족
부적합 (nonconformity)	요구사항의 불충족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지속적 개선 (continual improvement)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순환(반복)적 활동
인원 (personnel)	조직의 이사, 관리자, 종업원, 임시직원/임시근로자, 자원봉사자 ※ 다양한 유형의 인원은 다양한 유형 및 수준의 부패리스크를 야기하며, 조직의 부패리스크 평가 및 부패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 부속서 A.8.5 참조 (KS A ISO 37001:2016)

비즈니스 관련자 (business associate)	조직이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외부자 ※ 비즈니스 관련자는 클라이언트, 고객, 합작투자파트너, 컨소시엄 파트너, 계약업체, 컨설턴트, 하도급업체, 공급업체, 중간대리점, 어드바이저, 에이전트, 유통업체, 판매중개인, 기타 제3자 등을 말하며, 부패리스크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넓게 관련자를 해석해야 한다. ※ 비즈니스 관련자는 조직의 형태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조직의 리스크 평가나 절차에 따라 비즈니스 관련자를 다르게 다룰 수 있다. 이 표준에서 “비즈니스 (business)”에 대한 언급은 조직의 존재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공직자 (public official)	지명, 선출 또는 승계에 관계없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속한 사람 또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포함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국내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직자와 대리인, 공직 후보자 등 ▶ 부속서 A.21 참조 (KS A ISO 37001:2016)
제3자 (third party)	조직과는 독립된 개인 또는 기관 ※ 모든 비즈니스 관련자는 '제3자'이지만 모든 제3자가 비즈니스 관련자는 아니다.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조직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재무, 가족,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해가 개인의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
실사 (實査, due diligence)	부패리스크의 성질 및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조직이 특정 거래, 프로젝트, 활동, 비즈니스 관련자 및 인원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세스

(1) 조직상황

그림 ISO 37001(2016) 조직상황의 요구사항(요약)

»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소 및 조직의 목적과 관련된 대내외적 요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지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체계 필요 ■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업데이트하여 이를 토대로 조직의 사업계획에 반영
4.3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4.4 부패방지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한계와 적용가능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기록,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검토 ■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개선 ■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 및 부패를 예방, 적발, 취급할 조치들을 포함 ■ 조치의 비례성을 전제로 조치의 합리성
4.5 부패리스크 평가	
 <pre> graph LR A[부패리스크 식별] --> B[식별된 부패리스크 평가 및 우선순위화] B --> C[평가된 부패리스크 완화 위한 조직의 기존 통제방식의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 C --> D[부패리스크 평가 검토] </pre>	

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조직은 조직의 목적과 관련한 대내외적 쟁점들과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이슈들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다음의 요인들을 제한 없이 포함해야 한다.

- a) 조직의 규모, 구조 및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
- b) 조직의 운용 또는 운용이 예상되는 장소(위치)와 부문
- c) 조직의 활동과 운용의 성질, 규모, 복잡성
- d)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 e)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 및 조직을 통제하는 실체
- f) 조직의 비즈니스 관련자
- g) 공직자와의 상호작용의 성질과 정도
- h)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제적, 계약적 및 직업상의 책임과 의무(obligations and duties)

※ 만약 조직이 다른 조직의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조직은 다른 조직의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 부속서 A.13.1.3 참조 (KS A ISO 37001:2016)

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조직은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 a)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 b) 이러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요구사항

※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 시,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의무적 요구사항과 비의무적 기대사항, 그리고 자발적 의지표명을 구분할 수 있다.

3)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조직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설정 시 다음을 고려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경계와 적용 가능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 적용 범위는 문서화하여 이용 가능해야 한다.

- a) '조직과 조직상황 이해'에서 언급된 대내외적 이슈 사항들
- b)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의 이해'에서 언급된 요구사항
- c) '부패리스크 평가'에서 언급된 부패리스크 평가의 결과

▶ 부속서 A.2 참조 (KS A ISO 37001:2016)

4)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조직은 요구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기록,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해야 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조치들과 부패를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에서 언급된 요인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 부패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부패를 예방하고 탐지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은 없다.

▶ 부속서 A.3 참조 (KS A ISO 37001:2016)

Tip! 부패는 보통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과 적발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조직의 지배기구(존재하는 경우)와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관련된 부패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확약을 하고, 부패의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고안된 조치를 진정한 의도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감당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비용부담 또는 요식절차화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너무 간단하거나 비효과적인 조치여서는 안 된다. 조치의 수준은 부패리스크의 수준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충분히 예방·적발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패리스크 평가



① 조직은 정기적인 부패리스크 평가(들)를 실시하여야 한다.

- a) 조직과 조직상황에서 나열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조직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식별
- b) 식별된 부패리스크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c) 평가된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직의 현재 관리방법에 대한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② 조직은 방침과 목표를 고려하여 조직의 부패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③ 부패리스크 평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a) 조직이 규정한 시기 및 빈도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변경사항 및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실시
- b) 조직의 구조나 활동에 대한 상당한 변경사항

④ 조직은 부패리스크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였음을 실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Tip! 조직이 어떻게 부패리스크 평가를 하고,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며, 어떻게 부패리스크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수용 가능한 또는 용인 가능한 부패리스크의 수준(즉, 리스크 수용범위) 결정 모두 조직이 판단하여 선택한다. 특히, 부패리스크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의 설정(예를 들어, 리스크가 “낮음”, “중간”, “높음”의 여부)은 조직의 부패방지 방침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 부속서 A.4 참조 (KS A ISO 37001:2016)

(2) 리더십

그림 ISO 37001(2016) 리더십의 요구사항(요약)

» 리더십

5.1 | 리더십과 의지표명



의지표명, 방침승인, 연계성 보장, 자원배분, 이행 효과성 감독

5.2 | 부패방지 방침

Anti-Bribery Policy (Global)

1. Policy Summary
The nature of our business often requires that we interact with officials of variou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Our Code of Business Conduct, the law and this Global Anti-Bribery Policy establish certain limits on these interactions, particularly where we might be providing something of value to a government official.

This policy is intended to provide a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the U.S. Bribery Act (UKBA) and other anti-bribery laws in order to avoid inadvertent violations and to recognize potential issues in time for them to be addressed appropriately. A violation of anti-bribery laws can lead to sever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therefore it is vital that we not only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this policy, but comply with it in our daily work.

This document contains:
1. Policy Applies To/Eligibility
2. Policy Details
3. Policy Purpose
4. Key Terms and Definitions
5. Related Policies, Processes, and Guidelines

2. Policy Applies To/Eligibility
This policy applies to all employees of The Coca-Cola Company and its world-wide subsidiaries, including officers, directors, and agents, independent of whether they are U.S. citizens.

5.3 |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부패방지 관련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 부서별/직위/직급별 역할과 책임의 구체화
- 부패방지 책임자의 기능

1) 리더십과 의지표명

① 지배기구

조직에 지배기구(최고의결기구, 예: 이사회)가 있는 경우, 지배기구는 다음 사항을 통해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에 대한 상층부의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입증해야 하며, 조직에 지배기구가 없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최고경영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a) 조직의 부패방지 방침을 승인
- b) 조직의 전략과 부패방지 방침의 일관성 보장
- c) 주기적으로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용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검토
- d)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이 할당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요구
- e)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과 효과성을 최고경영자가 적절히 감독



②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를 다음의 사항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 a) 조직의 부패리스크를 충분히 다루기 위해 방침과 목표를 포함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 유지 및 검토됨을 보장
- b)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들이 조직의 프로세스에 통합됨을 보장
- c)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배치
- d) 부패방지 방침에 관하여 내·외부 의사소통
- e)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의 중요성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내부 의사소통
- f)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보장
- g)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고 지원
- h) 조직 내에 적절한 부패방지 문화를 촉진
- i) 지속적 개선 촉진
- j) 기타 관련 경영자/관리자의 책임 범위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부패의 예방 및 발견에
- k) 대한 리더십을 실증하도록 그들의 역할을 지원
- l) 의심되는 부패 및 실제 부패에 대한 보고절차 이용을 장려
조직의 부패방지 방침 위반이나 의심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선의적 보고나 타당한 확신에 근거한 보고 또는 거절이 조직의 사업상 손실(부패에 참여한 개인을 제외하고)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참여를 거절함으로 인해 어떠한 인원들도 보복이나 차별 또는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음을 보장
- m) 계획된 주기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내용 및 운용, 그리고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부패의 혐의를 지배기구(해당하는 경우)에 보고

▶ 부속서 A.5 참조 (KS A ISO 37001:2016)

2) 부패방지 방침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패방지 방침을 수립, 유지, 검토해야 한다.

- a) 부패 금지
- b) 조직에 적용 가능한 부패 방지법 준수를 요구
- c) 조직의 목적에 적절
- d) 부패방지 목표의 수립, 검토, 달성을 위한 틀을 제공
- e)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행의지를 포함
- f) 선의에 의하거나 보복의 두려움이 없이,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 제기를 권장함
- g)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 포함
- h)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의 권한 및 독립성에 대한 설명
- i) 부패방지 방침의 미준수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

부패방지 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부패 리스크가 중간 이상인 비즈니스 관련자와 조직 내 적절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그림 글로벌 민간 기업의 부패방지 방침 <예시>

부패방지 방침

- I. 목적
- II. 본 정책은 _____ 등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III. 감독 및 관리
- IV. 우리 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와 부패를 금지합니다
- V. 허용 가능한 비용
- VI. 우리 회사는 급행료 지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VII. 회사 자원은 정치적 현금이나 활동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VIII. 자선 기부 및 행사 후원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IX. 우리 회사는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X. 청탁과 감청은 신고해야 합니다
- XI.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 XII. 우리 회사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고객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 XIII. 인수 합병 활동은 부패방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 XIV. 연례 교육 및 수료증
- XV. 신고 및 비·보복
- XVI. 징계 조치

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① 역할과 책임

■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준수를 위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음
- 부패방지 준수 기능의 책임 및 권한을 조직 내에서 할당하고 조직 내의 모든 계층에서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함

■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 모든 계층의 관리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부서 또는 기능에 적용되고 준수될 것을 요구할 책임이 있음

■ 지배구조(해당하는 경우)

- 지배구조는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모든 책임 있음

Tip!

최고경영자 및 모든 인원들이 부패방지 관련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지속적으로 챙겨야 함

② 부패방지 준수책임자/준수기능

- 지배기구 및 최고경영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부패방지 준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 a)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조직에 의해 설계되고 실행됨을 감독
- b)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부패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인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
- c)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이 표준의 요구사항과 적합함을 보장
- d) 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준수 책임자에게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성과를 보고

-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충분한 자원, 그리고 적절한 적격성, 지위, 권한 및 독립성이 가진 인원(들)에게 부여해야 함
- 조직 외부 인원에게 부패방지 준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최고경영자는 외부에 위임된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이 업무 관련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 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어떤 문제나 우려사항이 제기될 경우, 지배기구(해당하는 경우) 및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보고해야 함

- ▶ 부속서 A.6 참조 (KS A ISO 37001:2016)

③ 의사결정의 위임

- 최고경영자가 인원에게 부패리스크가 중간 이상인 경우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 경우, 조직은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권자(들)의 권한 수준이 적절하고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것을 요구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또는 일련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함
 -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준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한 부분으로 의사결정 위임 프로세스가 주기적으로 검토됨을 보장해야 함
- ※ 의사결정의 위임은 최고경영자 또는 지배기구(해당하는 경우)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잠재적 법적 책임도 위임된 인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3) 기획

그림 ISO 37001(2016) 기획의 요구사항(요약)

»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리스크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리스크 ■ 경제적 리스크 ■ 감독규제 리스크 ■ 법적 리스크 ■ 평판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요구 감소 ■ 신뢰 형성 ■ 지속가능한 경영
6.2 부패방지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기능과 수준에 적합한 목표 수립 ■ 계획 수립 시 결정사항 	

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 조직은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에 언급된 이슈,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에서의 요구사항, 부패리스크 평가에서 파악된 리스크, 그리고 다음 사항을 위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선할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 a)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보증
- b) 부패방지 방침 및 목표에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예방 또는 감소
- c)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모니터링
- d) 지속적 개선의 달성

조직은 다음을 기획해야 한다.

- 식별된 부패리스크와 개선의 기회에 역점을 둔 조치
- 조치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시행하는 방법
-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2)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조직은 관련 기능 및 계층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부패방지 방침과 일관성 존재
- b) (가능한 경우) 측정의 가능성
- c)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에 언급된 적용 가능한 이슈,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에서 언급된 요구사항, '부패리스크 평가'에서 파악된 부패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 d) 달성 가능해야 함
- e) 모니터링되어야 함
- f) 의사소통(전파)되어야 함
- g) 필요에 따라 적절히 갱신되어야 함

조직은 부패방지 목표에 관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목표 달성 방법을 기획할 때,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달성 대상
- 필요 자원
- 책임자
- 목표달성 시기
- 결과 평가 및 보고 방법
- 제재 또는 처벌을 부과하는 인원

(4) 지원

그림 ISO 37001(2016) 지원의 요구사항(요약)

» 지원



1) 자원

조직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 부속서 A.7 참조 (KS A ISO 37001:2016)

2) 역량/적격성

① 일반사항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 a) 조직의 관리 하에 부패방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결정
- b)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또는 경험을 근거로 이러한 인원들이 적격하다는 것을 보장
- c) 적용 가능한 경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 d) 역량의 증거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

※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써 현재 고용한 직원이나 계약 중인 관련자에 대한 훈련 및 코칭 제공, 업무 재배치 또는 역량 있는 개인의 고용 및 관련자와의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고용절차

■ 조직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용절차를 시행한다.

- a) 고용의 조건으로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며, 미준수 시에는 인원을 징계하는 권한을 조직에게 제공
- b) 고용 개시 후 적절한 기간 내에 부패방지 방침에 대한 사본 또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방침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
- c) 조직은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위반한 인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 보유
- d) 다음의 사유로 인원이 보복, 차별 또는 징계조치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
 - 조직이 경감하지 않은 중간 이상의 부패리스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조직의 위험 관련 활동을 거절하거나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미수의, 실행된, 또는 의심되는 부패나 부패방지 방침 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위반에 대해 선의나 합리적인 확신을 근거로 제기되는 우려사항 또는 보고(개인이 위반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

- 조직은 '부패리스크 평가'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중간 이상의 부패리스크에 노출되는 지위에 있는 모든 직위 및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 a) 해당 인원이 고용, 전근 또는 승진되기 전 실사를 시행하여 고용이나 업무재배치가 합리적인 것이며, 해당 인원이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
- b) 인원들이 부패 조장을 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보호장치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성과보너스, 성과목표 및 보수에 대한 기타 인센티브를 주기적으로 검토
- c) 해당 인원과 최고경영자가 부패방지 방침 준수에 대한 연례 선언을 제출하여 부패방지 방침 준수를 확인

※ 부패방지 준수선언은 단독으로 또는 넓은 의미의 준수선언 프로세스의 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 부속서 A.8 참조 (KS A ISO 37001:2016)

3) 인식과 교육훈련

조직은 부패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하고 아래의 이슈들에 역점을 두어 직원들에게 부패방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a) 조직의 부패방지 방침 및 절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준수 의무
- b) 부패리스크 및 부패로 인하여 조직 및 인원에게 초래되는 피해
- c)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
- d) 청탁 또는 뇌물 제공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
- e) 부패를 예방 및 회피하고 중요 부패리스크 지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 f)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향상된 부패방지 성과에 대한 직원의 기여(공헌)
- g)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인 결과
- h) 모든 우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
- i) 이용 가능한 교육 훈련과 자원에 대한 정보

인식과 교육훈련은 직원의 직무, 노출된 부패리스크,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갱신될 때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은 조직을 대신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즈니스 관련자가 중간 이상보다 높은 부패리스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리스크평가를 고려하여 부패방지 인식과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는 인식과 교육훈련이 필요한 비즈니스 관련자, 교육훈련 내용 및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이 파악되어야 한다. 조직은 교육훈련의 절차와 교육훈련의 내용,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 요구사항은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을 통해 의사소통 될 수 있으며, 조직, 비즈니스 관련자 또는 그 목적 유지를 위해 지정된 기타 관계자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 부속서 A.9 참조 (KS A ISO 37001:2016)

4) 의사소통

① 조직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대내외적 전달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a) 의사소통 내용
- b) 의사소통 시기
- c) 의사소통 대상
- d) 의사소통 방법
- e) 의사소통 담당자
- f) 의사소통 언어

Tip! 언어의 경우는, 본사 지역의 언어 이외에, 활동(영업)하고 있는 지역 내 언어로 해당 지역의 인원 및 관계자들과 대내외적 전달사항 및 의사소통 등이 가능해야 한다.

② 부패방지 방침은 열람이 가능해야 하며, 중간 이상의 부패리스크가 있는 인원 및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직 내·외부의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부패방지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5) 문서화된 정보

① 일반사항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
- b)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문서정보의 범위는 ① 조직의 규모와 사업활동의 유형,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②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상호작용, ③ 인원의 역량 등의 이유로 조직마다 다를 수 있다. 문서정보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일부로써 보유하거나 다른 경영시스템(예: 준수, 재무, 상업(commercial), 심사 등)의 일부로써 보유할 수 있으며, 조직의 문서관리 방침이 적용된다.

▶ 부속서 A.17 참조 (KS A ISO 37001:2016)

② 작성(Creating) 및 갱신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경우, 조직은 다음 사항의 적절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식별 및 내용(description)(예: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문서번호)
- b)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및 매체(예: 종이, 전자매체)
- c)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③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 a)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서 이용이 가능함
- b) 비밀성의 상실, 부적절한 이용, 내용의 부실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되어야 함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조직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강조해야 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기획과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직이 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하게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배포, 접근, 검색 및 이용
- 보관과 보존 (가독성 보존 포함)
- 변경 관리 (예: 버전 관리)
- 보유 및 폐기

※ 접근(access)이란 문서화된 정보를 보는 것만 허락하거나, 문서화된 정보를 보고 변경하는 허락 및 권한에 관한 결정을 의미할 수 있다.



(5) 운용

그림 ISO 37001(2016) 운용의 요구사항(요약)

»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8.2		실사
8.3		재무적 관리	8.4		비재무적 관리
8.5		통제된 조직과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 방지 관리 시행	8.6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
8.7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8.8		부패방지 관리의 부적절성에 대한 관리
8.9		문제/우려사항 제기	8.10		부패의 조사 및 조치

1) 운용 기획 및 관리

조직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에서 결정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프로세스를 계획, 실행,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

- a) 프로세스의 기준 수립
- b) 수립된 기준에 따른 프로세스 관리의 실행
- c) 프로세스의 이행을 보장하는 문서정보의 유지·보관

이러한 프로세스는 '실사, 재무적 관리, 비재무적 관리, 통제받는 조직과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방지관리 실행,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선물/접대/기부 및 유사 편익, 미흡한 부패방지관리, 문제/우려사항 제기, 부패의 조사 및 조치'에서 언급된 특정한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직은 계획된 변경을 관리하고 의도하지 않은 변경의 결과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은 외주처리 프로세스가 관리됨을 보장해야 한다.

※ 비즈니스 관련자의 정의에 외주처리 제공자를 포함하고 있고, 외주처리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ISO 경영시스템 표준의 핵심 문구는 이 표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실사(due diligence)

조직은 '부패리스크 평가'가 다음과 관련하여 중간 이상의 부패리스크로 평가된 경우

- a) 특정 범주의 거래, 프로젝트 또는 활동
- b) 특정 범주에 속한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계획된 관계 또는 지속적인 관계
- c) 일정 직위에 있는, 특정 범주의 인원

이 범주에 속하는 실제 거래, 프로젝트, 활동, 관계자, 인원에 대하여 적절한 실사를 시행하여 해당 부패리스크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다른 수준의 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실사는 규정된 주기로 업데이트하여 변경사항과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 조직은 어떤 범주의 인원과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위의 a), b) 및 c)에 기재된 요인들이 전부 아니다.

▶ 부속서 A.10 참조 (KS A ISO 37001:2016)

3) 재무적 관리

조직은 조직의 재무거래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장하며, 조직, 인원 또는 관계자에 의한 부패리스크(뇌물의 제의·약속·제공·수수·요구)를 줄일 수 있는 재무통제와 재무기록관리(record-keeping)를 실행하여야 한다.

▶ 부속서 A.11 참조 (KS A ISO 37001:2016)

4) 비재무적 관리

조직은 조달, 운용, 영업, 상업, 인적 자원, 법규 및 규제 활동과 같은 분야와 관련된 부패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재무적 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 모든 특정 거래, 활동 또는 관계는 비재무적 관리뿐만 아니라 재무적 대상도 될 수 있다.

▶ 부속서 A.12 참조 (KS A ISO 37001:2016)

5) 통제받는 조직과 비즈니스 관련자의 부패방지 관리 실행

① 조직은 조직이 관리하는 기타 모든 조직이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요구하는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 a)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실행
- b) 자체 부패방지관리의 실행

조직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조직들이 부패리스크 평가에 따른 부패리스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 조직이 소유지분이나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등을 통해 다른 조직의 경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다른 조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 부속서 A.13.1.3 참조 (KS A ISO 37001:2016)

② 부패리스크 평가 또는 실사를 통해 파악된 중간 이상의 부패리스크에 대해 조직이 통제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관련자,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자가 실행한 부패방지 관리가 관련 부패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조직이 통제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하여 조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 a) 조직은 비즈니스 관련자가 관련 부패리스크를 관리하는 부패방지 관리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
- b) 비즈니스 관련자가 부패방지 관리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실행 가능하다면 조직은 관련 거래, 프로젝트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관리수단의 실행을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요구
 - 부패방지를 위한 관리수단 실행을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패리스크와 조직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할 때 이를 고려

▶ 부속서 A.13 참조 (KS A ISO 37001:2016)

Tip! 조직은 가능한 한 비즈니스 관련자나 합자회사가 조직과의 거래를 포함하는 부패방지 통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통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① 거래의 규모
- ② 관계자나 조인트벤처의 규모와 복잡성
- ③ 거래가 발생하는 위치와 분야
- ④ 거래의 계약구조
- ⑤ 관련 법령, 규정, 계약, 직업상의 의무
- ⑥ 지급 금액과 방법
- ⑦ 관계자나 조인트벤처가 조직을 대신해 다른 조직과 거래를 하는지 여부
- ⑧ 국내 공무원 및 외국 공무원과 교류한 횟수와 교류의 성격
- ⑨ 관계자나 합자회사가 조직에 제기하는 기타 부패리스크

6)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조직은 중간 위험보다 높은 부패리스크가 있는 임직원 및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 a) 관련 거래, 프로젝트, 활동 또는 관계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관련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부패 방지에 대한 비즈니스 관련자의 의지표명
- b) 관련 거래, 프로젝트, 활동 또는 관계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관련자의 이익에 의한, 이익을 대신하는, 또는 이익을 위한 부패가 발생한 경우, 조직은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관계에 대한 종결 가능

해당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패리스크를 평가할 때, 위의 a) 또는 b)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조직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도 관리해야 한다.

▶ 부속서 A.14 참조 (KS A ISO 37001:2016)

7)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제안, 제공 또는 수락이 있거나 충분히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 조직은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의 제안, 제공 또는 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편익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 선물, 여흥 및 접대
- b) 정치적 기부금 및 자선 기부금
- c) 클라이언트 대표자나 공직자의 여행
- d) 홍보비
- e) 후원
- f) 지역사회 자선활동
- g) 훈련비
- h) 클럽 멤버십
- i) 개인적 호의
- j) 기밀정보 및 특권정보



▶ 부속서 A.15 참조 (KS A ISO 37001:2016)

Tip!

위의 항목에서 수령인의 업무 관련 독립성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주기 위해 의도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수령인에게 의무감을 주는 경우에는 '뇌물'의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8) 부패방지 관리의 불충분에 대한 관리

특정 거래, 프로젝트,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관계에 대한 실사에서 부패방지 통제를 개선하더라도 평가된 리스크의 제거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규명된 경우에,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 a) 기존의 거래, 프로젝트, 활동 및 관계는 해지/중단/유예/철회가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거래, 프로젝트, 활동 및 관계의 리스크와 성격에 맞는 적절한 조치
- b) 새롭게 제안된 거래나 프로젝트는, 연기를 신청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거절

9) 문제/우려사항 제기

조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 a) 시도 또는 의심되는 실제 부패 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서의 모든 위반사항 또는 취약점을 부패방지 책임자 또는 적절한 인원(직접 또는 적절한 제3자를 통해)에게 선의적으로 또는 타당한 확신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
- b)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이 보고서를 기밀로 취급하여 보고서 및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참조된 다른 인원의 신원을 보호할 것을 요구
- c) 익명의 신고를 허용
- d) 선의적으로 또는 타당한 확신에 근거하여 부패의 시도, 실제 수수 또는 의심에 대해 또는 부패방지 방침이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인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보복으로부터 인원 보호
- e) 인원이 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 우려 또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해당 인원이 적절한 인원(책임자 및 부서)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조직은 모든 인원이 신고절차를 인식하고, 이용 가능하며, 절차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보호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 절차는 기타 우려사항(안전, 위법행위, 범법행위, 기타 심각한 리스크)의 보고에 사용되는 절차와 동일하거나 그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조직은 보고 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제3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관할지역(jurisdictions)에서는 상기 b) 및 c)의 요구사항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경우 조직은 이를 준수할 수 없음을 문서화한다.

10) 부패의 조사 및 조치

조직은 다음의 내용과 같은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 a) 신고, 적발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부패에 대해 또는 부패방지 방침이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위반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평가와 조사를 요구
- b) 조사에서 부패 또는 부패방지 방침이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위반이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 c)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자들에게 권한 부여
- d) 관련된 인원에게 조사에 대한 협조 요구
- e) 조사 현황 및 결과가 부패방지 준수기능 및 기타 준수기능에 적절하게 보고되도록 요구
- f) 조사가 기밀로 수행되고 조사결과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요구

조사는 조사받는 역할이나 기능 인원 이외의 인원이 수행하고 보고되어야 한다. 조직은 조사를 수행할 비즈니스 관련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조사받는 역할이나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게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 일부 관할지역에서는 상기 f)의 요구사항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경우 조직은 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문서화한다.

▶ 부속서 A.18 참조 (KS A ISO 3700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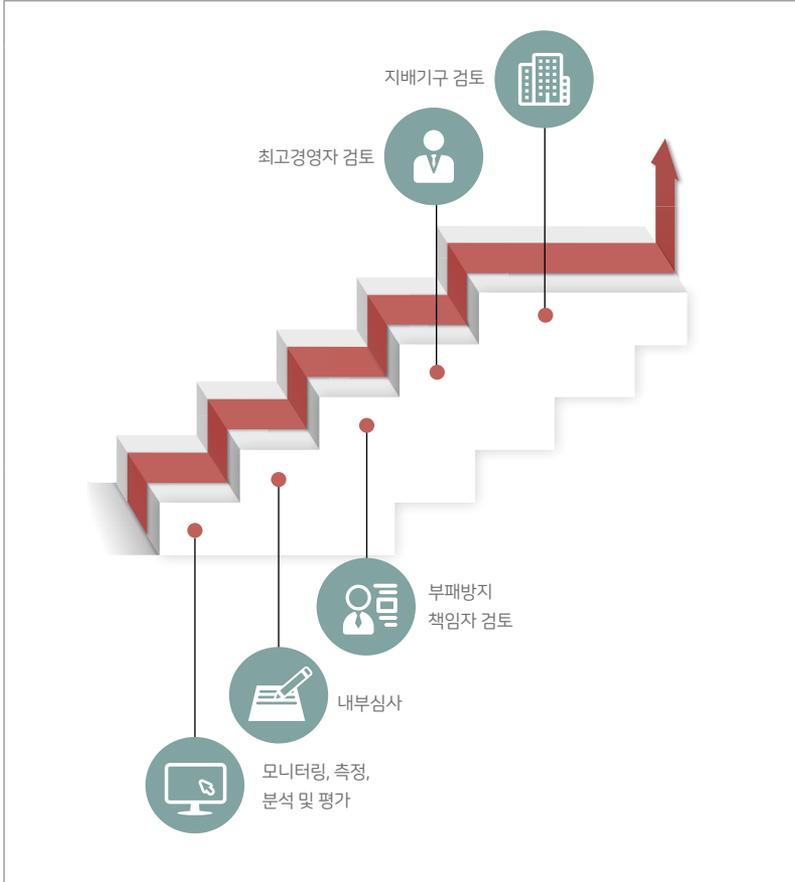
Tip!

적절한 조치에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위반한 인원 징계(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고부터 고용해지까지), 우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지배기구에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독립조사란 부패혐의가 발생한 경우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를 의미한다. 단,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 외부의 독립된 당사자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6) 성과평가

그림 ISO 37001(2016) 성과평가의 요구사항(요약)

» 성과평가



1)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조직은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 a) 모니터링 및 측정의 대상
- b) 모니터링 책임자
- c)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방법
- d) 모니터링 및 측정 수행 시기
- e)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기
- f) 정보의 보고 대상 및 방법

조직은 방법 및 결과의 증거로서 적절한 문서정보를 보유해야 하며, 부패방지 성과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부패리스크에 노출된 지위에 있는 인원과 부서에 대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성과를 검토해야 한다.

▶ 부속서 A.19 참조 (KS A ISO 37001:2016)

2) 내부심사

① 조직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적인 주기에 따라 내부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 a) 다음 사항의 준수 여부: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조직 자체의 요구사항
 - ISO 37001(2016)의 요구사항
- b)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과 유지

※ ISO 19011 참조, 조직의 내부심사 활동 범위 및 규모는 조직의 규모, 구조, 성숙도, 및 위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조직은 다음의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 a) 주기, 방법, 책임, 요구사항의 기획 및 보고를 포함하는 심사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실행 및 유지, 그리고 심사프로그램에는 관련 프로세스의 중요성과 이전 심사 결과 고려
- b) 심사기준 및 개별 심사의 적용범위 규정
- c)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격성 있는 심사원의 선정 및 심사 수행
- d) 관련 경영자,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 최고경영자 및 관련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에게 심사결과와 보고를 보장해야 함
- e) 심사 프로그램 실행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③ 이들 심사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심사는 절차, 관리, 시스템에 대해 다음의 징후를 검토하는 내부심사 프로세스 또는 다른 절차로 구성되어야 한다.

- a) 부패 또는 부패 혐의
- b) 부패방지 방침 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위반
- c) 비즈니스 관련자가 해당 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d)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약점 또는 개선 기회

④ 조직은 심사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원에 의한 이러한 심사가 수행됨을 보장해야 하며, 심사원이 자신의 업무영역을 심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a) 해당 프로세스를 위해 수립되거나 지정된 독립적인 기능 또는 인원
- b) 부패방지 책임자(심사 범위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평가, 또는 부패방지 준수기능의 책임과 관련된 유사한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한)
- c) 심사 대상 이외의 부서 또는 기능을 담당하는 적절한 인원
- d) 적절한 제3자
- e) a) ~ d)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그룹

⑤ 부속서 A.16 참조 (KS A ISO 37001:2016)

3) 경영검토

① 최고경영자 검토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그리고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주기에 따라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이전 경영 검토에 따른 조치의 상태
- b)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연관된 대내외적 이슈의 변화
- c) 다음의 동향을 포함하는 부패방지 성과 정보
 - 비적합과 시정조치, 모니터링과 측정 결과, 심사결과, 부패에 대한 보고서, 조사, 조직 이 직면한 부패리스크의 성질과 범위
- d) 부패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 e) '지속적 개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기회

최고경영자 검토의 결과물은 지속적인 개선 기회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변경 필요성에 관련된 결정을 포함해야 하며, 조직은 경영자 검토 결과의 증거로서 문서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지배기구(존재하는 경우)에 보고해야 한다. 검토 결과 및 보고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해야 한다.

② 지배기구 검토

지배기구(해당하는 경우)는 최고경영자 및 부패방지 책임자가 제공한 정보와 지배기구가 요청 또는 취득한 기타 다른 정보를 토대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조직은 지배기구 검토 결과의 증거로서 요약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4) 부패방지 책임자 검토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a) 조직이 직면한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 여부
- b) 효과적인 실행 여부

적절한 경우, 부패방지 책임자는 지배기구(해당하는 경우) 및 최고경영자, 또는 이들의 적절한 하부위원회에 조사 및 심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충족성 및 실행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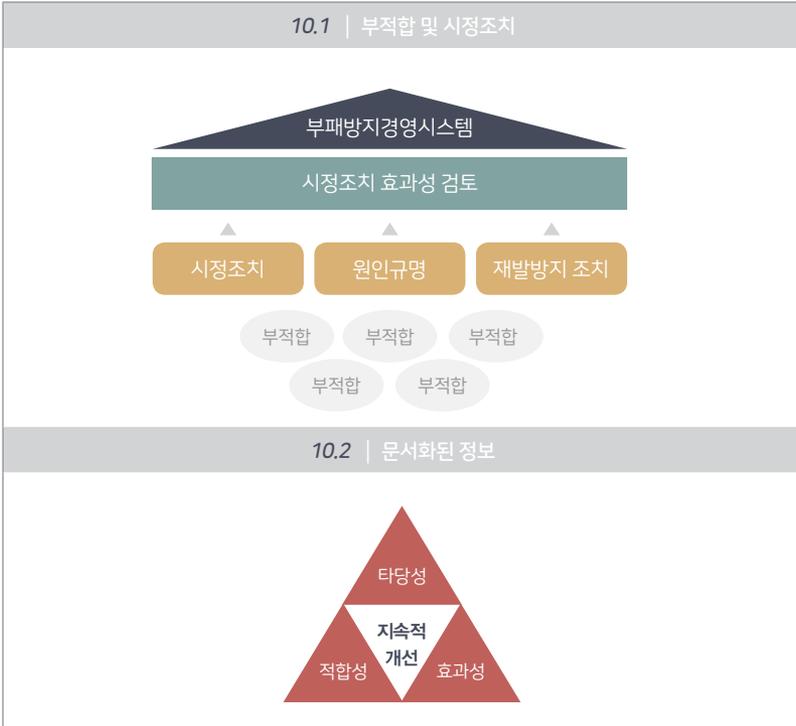
※ 보고의 주기는 조직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나, 최소 연 1회 실시할 것을 권장, 비즈니스 관련자에 의한 관찰사항이 부패방지 책임자, 최고경영자 및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해당하는 경우)와 적절히 의사소통되는 경우, 조직은 비즈니스 관련자를 활용하여 이 검토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Tip!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충족성 및 실행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3의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제3의 조직이 관찰한 내용이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7) 개선

그림 ISO 37001(2016) 개선 요구사항(요약)

» 개선



1) 부적합 및 시정조치

부적합 사항의 발생 시 조직은 다음의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 a)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부적합에 사항에 대해 반응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 부적합 사항을 통제하고 시정조치
 - 부적합 사항 결과를 처리
- b) 부적합 사항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합 사항의 원인 제거 필요성을 다음에 따라 평가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검토
 - 부적합의 원인 결정
 - 유사한 부적합 요인의 존재 또는 잠재적 부적합 요인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결정
- c) 필요한 조치를 실행
- d) 시행된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검토
- e)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변경

시정조치는 부적합 사항의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게 적합해야 하며, 조직은 부적합 사항의 성격과 시행된 후속조치와 시정조치 결과를 문서정보로 보유해야 한다.

▶ 부속서 A.20 참조 (KS A ISO 37001:2016)

2) 지속적인 개선

조직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부속서 A.20 참조 (KS A ISO 37001:2016)

III.

ISO 37001(2016) 이행 효과와 인증리스크



1. ISO 37001(2016) 이행 효과
2. ISO 37001(2016) 이행을 위한 자가분석(GAP) <예시>
3. ISO 37001(2016) 인증리스크

ISO 37001(2016)

이행 효과

- a)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경우, 조직이 그동안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와 단계를 밟아 왔다는 것을 검찰 또는 법원에 증명(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b)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이행을 돕고 현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통제조치를 강화시킬 수 있다.
- c) 경영진과 오너, 투자자와 비즈니스 관련자들에게 조직이 효과적인 부패방지 관련 통제활동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행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 d) 뇌물 및 부패 관련 문제 발생에 따른 비즈니스의 중단 또는 부패 관련 조사 및 사후 처분으로 인한 자원과 유무형의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e) 정부, 고객, 투자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에 요구하는 부패방지 대책과 관련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 f) 조직의 사업 운영은 물론 공급망 전체에 걸쳐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 g) 부패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수행 시 컴플라이언스경쟁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다.
- h) 부패 문제에 대한 조직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윤리적인 조직이라는 평판과 명성의 기본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ISO 37001(2016) 이행을 위한 자가분석(GAP) <예시>

ISO 37001(2016) 이행을 통해 조직 내 부패리스크가 있는 업무 부분에 대해 해당 리스크를 파악해 정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통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다.

ISO 37001(2016)은 이러한 리스크 중심 접근 방법을 통해 조직 내에서 부패리스크가 예상되는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과정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및 에이전시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용이 중요하다.

구분		진단결과			진단내용 및 의견 등
		적합	보완	개선	
조직의 이해	반부패 활동과 관련한 내부 및 외부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조직의 반부패 대상 범위				
리더십	최고위층이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의사소통				
계획 (Planning)	내외부 이슈, 조직의 변화, 부패사건 발생,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				
지원 (Support)	재무적 지원, 교육 및 채용을 통한 인재 확보, 이를 위한 규정된 지침 마련				
운영 (Operation)	반부패를 위한 재무적, 비재무적 통제 구축 및 제3자 실사(Due diligence)				
성과평가 및 개선	반부패와 관련한 성과평가 측정 Tool, 경영진의 주기적인 검토, 개선				

4.1

조직의 목적, 반부패경영시스템의 목표 달성에 관련이 있는 내외부 이슈를 정의하고, 해당 내외부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는가?

4.2

ABMS(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 관련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 관련자는 정의되었고, ABMS 관련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 관련자의 요구사항을 확인·결정하였는가?

4.4

- (1)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및 개선을 위해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가?
- (2) 조직의 핵심/지원/경영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들이 주관하거나 관련된 업무/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있는가?

4.5

- (1) 정기적으로 부패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는가?
- (2) 부패리스크의 평가 기준이 수립되었는가?
- (3) 부패리스크 평가 결과를 ABMS의 설계 또는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는가?

5.1

- (1) (해당하는 경우) 지배기구는 ABMS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
- (2) 최고경영자는 ABMS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

5.2

최고경영자의 반부패 관련 경영 의지 및 방침이 문서화되고 검토되고 있는가?

5.3

-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역할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고, 의사통은 조직 내 모든 계층에서 잘 되고 있는가?
- (2)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준수기능/부서)의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고 부여되었는가?
- (3) 의사결정의 권한 위임 시의 프로세스는 적절하며 실제적, 잠재적 이해충돌이 없도록 의사결정 프로세스 또는 통제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6.1

ABMS를 기획할 때, 4.1(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과 4.2(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그리고 4.5(부패리스크 평가)에서 파악된 리스크를 고려하여 리스크와 기회 등을 정하였는가?

6.2 -----

- (1) 반부패 목표가 기능별, 계층별로 수립되었는가?
- (2) 반부패 목표는 적절한가?
- (3) 반부패 목표의 달성 계획은 수립되어 운용되고 있는가?
- (4) ABMS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고려사항 등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 되는가?

7.1 -----

조직은 ABMS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정하였고 제공하는가?

7.2 -----

- (1) 반부패 관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 인원의 역량/적격성을 결정하였는가?
- (2) 반부패 관련 고용절차가 실행되고 있는가?
- (3) 부패리스크(중간/높음)에 노출되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한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의 대응 관련 업무절차가 이행되는가?

7.3 -----

- (1) 임직원에게 대하여 부패방지의 인식 및 훈련을 제공하는가?
- (2) ABMS 관련 내외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 (3) 중간 또는 높음의 부패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하여 부패방지 인식 및 훈련을 다루는 절차가 수행되고 있는가?

7.4 -----

ABMS에 관하여 대내외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7.5 -----

- (1)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경우,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 되는가?
- (2)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는 문서정보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는가?

8.1 -----

- (1) 조직은 ABMS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요구사항 6.1(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프로세스를 계획, 실행 및 관리하는가?
- (2) 계획된 변경을 관리하고, 의도하지 않은 변경의 결과를 검토하는가?
- (3) 필요에 따라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 (4) 적용되는 경우, 외주처리 프로세스가 관리됨을 보장하는가?

표 조문별 자가분석(GAP)을 위한 세부 질문 사항

8.2 -----
특정 거래, 프로젝트, 활동, 비즈니스 관련자 또는 직원들에 대한 실사가 수행되는가?

8.3 -----
부패리스크를 관리하는 재무적 통제를 실시하는가?

8.4 -----
조달, 운용, 영업, 상업, 인사, 법적 규제적 활동 영역에 대한 비재무적 통제를 실시하는가?

8.5 -----
(1) 조직이 통제하는 모든 다른 조직에게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또는 자체 부패방지 관련 실행을 이행하는가?
(2) 통제하지 않는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가?

8.6 -----
평가결과, 부패리스크가 중간 또는 높음으로 나타난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부패방지 의지를 표명하게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행 가능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8.7 -----
선물, 접대, 기부, 기타 편익의 제의/제공/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8.8 -----
특정 거래, 프로젝트, 활동 및 관계에 대해 수행한 실사가 기존의 부패방지 통제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적절한 조치(변경 등)가 취해지는가?

8.9 -----
(1) 문제/우려사항의 제기 절차가 이행되는가?
(2) 모든 (임)직원이 보고절차를 인식하고, 보고 프로세스에 따른 보호받는 그들의 권리 및 보호방안 등을 인식하고 있는가?

8.10 -----
부패의 조사 및 조치의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가?

9.1 -----

- (1)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이 결정되었는가?
- (2)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방법 및 수행 시기 등이 결정되었는가?
- (3) ABMS의 성과 및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 (4)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9.2 -----

- (1) ABMS에 대한 조직 자체 요구사항, ISO 37001 표준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유지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계획된 주기로 내부심사를 수행하는가?
- (2) 이전 심사 결과뿐만 아니라 심사대상 프로세스 및 분야의 상태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부심사를 계획하는가?
- (3) 적절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적용범위와 심사주기 등을 가지고 있는가?
- (4) 적격한 심사원이 선정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 (5) 심사결과 관련 경영진, 부패방지 준수책임자, 최고경영자 및 지배기구 등에 보고 되는가?
- (6) 심사결과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가?

9.3 -----

최고경영자는 경영검토를 계획된 주기로 ABMS를 검토하고 있는가?

9.3 -----

지배기구는 ABMS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9.4 -----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는 ABMS를 지속적으로 평가·검토하는가?

10.1 -----

- (1) 즉각적인 부적합 통제 및 시정 조치가 취해지고, 그 결과를 적용하여 반영하는가?
- (2) 부적합의 재발 방지, 유사 부적합을 예방하기 위해 부적합의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 (3)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는가?
- (4) 필요한 경우, ABMS를 변경하는가?
- (5) 시정조치는 직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비하여 적절한가?
- (6) 부적합의 내용 및 취해진 후속 조치, 시정조치 결과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가?

표 기업 내 ISO 37001 이행관련 부서별 주요 역할(예시)

준법감사/내부감사	법무
<p>Gener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기준에 따른 의사 결정과 성과달성에 대한 압력 통제 ■ Audit/legal team에 대해 부패 이슈 사항의 적시 커뮤니케이션 <p>매년 부패 위험평가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뇌물/부패 위험 평가 ■ 감사프로그램에 뇌물/부패 위험요소(red flag)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부패 위험을 고려하여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구축 - 뇌물/부패 거래에 대한 인식 공유 <p>자율준수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내부제보 프로세스 구축 ■ 내부감사 시 효과적인 부패 위험 진단 반영 ■ 에이전트, 대리점에 대한 감사 수행 (on a rotating b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미션 지급 등에 대해 정기적인 리뷰 수행 - 기업인수 시 반부패 경영 검토에 대한 checklist 작성 - 반부패 경영 준수에 대한 에이전트 인터뷰 수행(매년) - 주기적인접대비등(entertainment expense)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에이전트 대상 관계 파악 및 거래 승인 총괄 ■ 매년 정기적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실사 및 승인 등을 수행 ■ 표준 계약서 사용(반부패 조항 삽입) ■ 준법서약서 징구 <p style="text-align: center;">회계 / 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통제/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사용 현황 추적 ■ 별도 계정으로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s)”를 기록 ■ 정부와의 계약서 별도 관리 ■ 합리적인 수준의 커미션과 보너스 지급인지 검토 ■ 역외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급 건 파악 ■ 사업관계자 지급 조건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윤리 규정에 반부패/FCPA 가이드라인 반영 ■ 지역별/직급별/업무 성격별 적절한 반부패 교육 시행 ■ 종업원들로부터 매년 준법서약서 징구

Tip!

청탁금/급행료(facilitation payment)는 대개 제공자가 금품의 지급 없이도 합법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불법 또는 비공식적 금품이라는 의미의 용어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 취업 허가, 통관 또는 전화 설치와 같이 일상적인 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성과를 보장받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인증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금품이다.

비록 청탁금/급행료가 그 성질상 사업을 수주받기 위한 부패 등과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대부분 지역에서 이는 불법이며 이 표준의 목적상 뇌물로 취급한다. 따라서 글로벌 규범에서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ISO 37001(2016) 인증리스크

3.1. ISO 37001(2016) 인증리스크

ISO 37001(2016)은 제3자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는 국제표준서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ISO 37001(2016)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조직 및 기관이 반부패 관련 법규준수 또는 부패리스크가 없거나 향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인증 이후에도 반부패 관련 법규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챙기며 해당 기관의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제3자 시각에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만약, ISO 37001(2016)의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충분한 기간의 실질적인 준비 없이 인증을 받고 난 후, 부패 관련 사건·사고가 해당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감독 당국과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ISO 37001의 인증이 해당 조직의 부패 이슈가 없거나 향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지 못하며, 인증결과만으로는 법적 면책 및 정상참작 등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ISO 37001의 인증은 반부패경영의 '목표나 결과'가 아닌, 해당 조직이 부패방지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신뢰 확보의 과정'의 한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

3.2. ISO 3600(2016) 인증 후 CEO가 검찰에 기소된 예(해외)

최근 이탈리아 국립탄화수소공사 ENI가 2017년 1월에 ISO 37001 인증받은 후, CEO가 국제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2017년 2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했다.

<https://www.ft.com/content/87983836-ee13-11e6-930f-061b01e23655>

Eni chief Claudio Descalzi charged with international corruption

Italian boss to stand trial with ex-CEO Scaroni over \$1.3bn Nigerian oil transaction



© Bloomberg



FEBRUARY 6, 2017 by James Pottin in Rome

이탈리아 검찰로부터 이탈리아 국립탄화수소공사(ENI)의 CEO가 2011년 나이지리아 탐사 면허 취득 관련 긴 조사 끝에 국제 부패 혐의로 2017년 2월에 기소된 사건으로, ENI는 탐사 면허 취득과정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아프리카 국가 법원에서도 반부패기구의 관련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탐사 면허를 박탈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내부적인 진행되는 부패 관련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2017년 1월 ENI는 이탈리아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았음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Eni becomes the first Italian company to obtain the ISO 37001: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e of conformity for its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

The verification process was conducted by the certification company RINA Services SpA. This is the first time the ISO has set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25/01/2017 12:00

 **Download the press release (PDF)**
pdf 24 kb

San Donato Milanese (MI), 25 January 2017 - Eni informs that it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cess of verification carried out by the certification company RINA Services SpA, leading certification body in Italy, to evaluate the conformity of Eni SpA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 with the requirements of ISO 37001: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the first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antibribery systems.

Eni is the first Italian company to receive that certification.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standar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on 15 October 2016, Eni started the certification process, which involved two audits by the certifying company aimed at verifying, through documentary checks, the adequacy of Eni SpA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 (stage 1), and its implementation through checks and interviews with people on the ground (stage 2).

The ISO 37001:2016 Certification confirms the quality of the system of rules and controls aimed at preventing corruption, developed by Eni since 2009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expressed in its Code of Ethics.

https://www.eni.com/en_IT/media/2017/01/eni-becomes-the-first-italian-company-to-obtain-the-iso-370012016-antibribery-management-systems-certificate-of-conformity-for-its-anti-corruption-컴플라이언스-program?lnkfrm=serp

ENI의 CEO 검찰 기소 소식은 내외적으로 ISO 37001의 부실 인증이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ENI Receives ISO 37001 Certification and ENI CEO Charged with Corruption
February 16, 2017

<https://www.jdsupra.com/legalnews/eni-receives-iso-37001-certification-50910/>

CEO(대표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물 및 반부패 이슈에 대표자가 연루되었다면, 해당 법인은 양벌규정의 면책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우리의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뇌물 및 반부패 관련 사항 또는 허용 수준은 대부분 최고경영진이나 임원들이 결정하고, 조직 내 구성원들은 이를 암묵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참고

ISO 37001(2016) 관련 법규범 개관



1. 개요
2.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3. OECD, 뇌물방지협약
4. UN, 반부패협약
5. G20, 2010년 반부패행동계획 채택과 2017~2018 반부패행동계획서 승인
6. 영국, 뇌물법(2010)과 이행지침서
7. 영국 표준화 기구(BSI), BS 10500(2011) 가이드라인
8. 한국, 청탁금지법
9.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반부패 가이드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은 그동안 기업 영역에서 발생했던 부패들이 야기한 문제들과 그에 따라 국경을 넘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 등을 체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시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97년의 OECD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03년의 UN 총회에서 반부패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외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부패방지 라운드’ 추진을 통해 부패방지 및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금까지 지속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의 FCPA는 규제 대상이 뇌물제공자에 한하는 한편, 영국 뇌물법은 뇌물을 공여(제공)와 뇌물수수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1977년 제정된 FCPA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외국 정부 관리를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뇌물법은 본사가 어디 있든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 관리의 매수뿐 아니라 기업인들 사이의 뇌물수수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심지어 뇌물수수에 연루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뇌물수수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뇌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을 제정하였다. FCPA는 통일된 윤리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각급 학교, 단체 등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1회 20달러(약 2만2800원) 이하, 연간 50달러(약 5만7000원) 이하의 선물이거나
가족, 친구 등 사적 관계에 근거한 선물은 허용된다.

미국의 FCPA 적용 규범은 기업(기관)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된다.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개요

제정연도	1977년	
규제행위	뇌물제공행위, 회계부정	
제재주체	미국 법무부(DOJ),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뇌물공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권발행인(Issuer) 2. 국내기업(Domestic conce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시민, 거주자,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조합, 협회, 합병회사 등 3. 외국기업(Persons other than issuers or domestic conce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과 미국기업이 아니더라도 뇌물제공행위(대리인, 메일, 우편 등 이용)가 미국에서 이뤄진 때 	
뇌물수수자	외국 공무원, 외국 정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 등 제공이 외국 공무원, 외국 정당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알 수도 있는 제 3자도 포함 	
금지행위	외국 공무원에게 거래의 획득 및 유지를 목적으로 뇌물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일정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의 제공, 약속 등	
처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경우 벌금 최대 200만 달러 - 개인지사의 경우 벌금 최대 10만 달러+최대 징역 5년형 2. 민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과 개인 모두 최대 벌금 1만 달러+불법이익 환수 	
기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PA를 위반한 법인과 개인은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됨 - 증권거래 중단 및 금지도 가능 	
유사입법국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인도 등	

FCPA 적용 시 리스크

'미 당국의 해외 부패기업 사냥법' 이라고도 불리는 FCPA의 적용 대상이 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200만 달러, 개인은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면허 박탈,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 금지, 증권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미 당국은 FCPA 이행에 있어 3가지 경향을 보인다.

첫째,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그간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FCPA 사건들은 대개 거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으로 수사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외국 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이다. 미국은 OECD 협약 회원국들의 더욱 활발한 집행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자국의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특히 집행실적이 저조한 국가들의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셋째, 특정 산업부문을 겨냥한 수사 활동 강화이다. 미국 법무부는 의료기기, 석유·가스 등 단발적인 사건을 통해 부패구조가 드러난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해 왔다. 2009~2010년경부터는 제약 등 특정 산업부문의 전반적인 부패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해당 산업의 구조와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이어서 선제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14억 달러의 부적절한 금품 지급

- Siemens AG 및 자회사들, 각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4,000건 이상 뇌물 지급
- 비지금 조성, 위장사업 컨설턴트 등을 통한 뇌물 지급
- 뇌물 지급 사실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 허위 기재, 조작



기타 비용

내부조사

- 300여 명의 변호사 등 인력이 내부 조사에 투입됨
- 34개국에 걸쳐 1,700건 이상의 인터뷰가 진행됨
- 10억 달러 이상의 법률, 회계, 구조조정비용 지출
- 회사 내 Compliance 조직 재정비
- 모니터: 외부파견 감사에 의해 회사 내의 제반 활동 감독(4년)

2006년 독일 검찰은 지멘스에서 일어난 횡령, 뇌물 수수, 자금세탁과 탈세 등 회계규정 위반을 포함한 부패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지멘스 본사와 일부 전·현직 직원들의 집을 압수 수색을 하고, 전·현직 간부를 체포했다.

당시 지멘스 전·현직 간부들은 2001~2004년 러시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지에서 거액의 뇌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4년에는 아테네올림픽의 보안시스템 설치 계약 건을 따내기 위해 지멘스는 그리스 내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당시 지멘스의 한 간부는 그리스 지사에 재직할 때 지사 수입 중 무려 10%를 뇌물로 사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일로 당시 경영진은 전직 퇴진했고 지멘스의 핀란드 노키아와의 무선기기 부문 합병도 연기됐다. 그 후 약 2년이 흐른 2008년 12월, 독일 검찰은 지멘스의 전직 경영진의 경영 의무 수행 실패에 대한 소송을 종료하면서 3억 9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워싱턴DC 연방 법원의 소송에서도 지멘스는 내부통제의 고의적 회피와 실패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에 4억 5000만 달러, 미국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3억 5000만 달러 등 총 8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지멘스 주식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독일 DAX에 모두 상장돼 있었다.

표 FCPA 적용된 예: 미국 엔지니어링 건설회사 KBR



배경

- KBR(Kellog, Brown & Root)의 전자회사가 여러 건의 FCPA 위반 혐의를 인정
- “대리인”을 통하여 1억 8천 2백만 달러의 뇌물이 지급됨
- 발생한 뇌물: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계약과 관련된 60억 달러



5억 7천 9백만 달러의 벌금

- 4억 2백만 달러 상당의 벌금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FCPA 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 7천 7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관련 사업 이익금도 몰취



KBR의 전 CEO는 FCPA 위반 혐의를 인정

미국 KBR 사건은 FCPA가 어떻게 해외 기업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의 엔지니어링 건설회사인 KBR는 2000년대 초 미국 정부로부터 KBR 자회사의 FCPA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회사는 나이지리아 공무원에게 1억 8200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994년~2004년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의 60억 달러 LNG 공장 건설계약 수주를 위해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에게 1억 800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되어 2009년 2월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였고, 4억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로 1억 7700만 달러의 사업 이익금을 몰취 당했다.

▶ 미국 기업이 총 5억 7,900만 달러의 벌금과 합의금을 부과받음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0년 프랑스의 엔지니어링 회사 테크닙(Tecnip)과 2011년 일본가스공사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테크닙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KBR의 나이지리아 사업 파트너였기 때문에 벌금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SEC에 9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일본가스공사도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뉴욕 소재 은행의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벌금을 내고 합의했다.

FCPA 적용 예: 미국 금융회사 Morgan Stanley
효과적인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인정받아 면책받은 사례

Morgan Stanley (2012, 2013)

부패방지 Compliance Program을 잘 구축하고 운용한 점을 고려하여 면책함

고려요소

- Morgan Stanley의 risk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업데이트함
-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FCPA, 내부통제제도 및 기타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부서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관련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며 관련 진단을 실시함
-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규제함

Morgan Stanley(모건 스탠리)의 전 중국 부동산 투자 운용 담당 대표 가스 피터슨(Garth Peterson)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제공하고 함께 부동산 지분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SEC로부터 FCPA 적용을 받고, 징역 5년 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피터슨은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건 스탠리가 지급해야 할 커미션으로 위장하였다. 마련한 뇌물은 중국인 공무원과 나눠 가졌고, 함께 상하이 부동산 지분을 비밀리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Morgan Stanley 법인은 효과적인 Compliance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을 인정받아 사실상 면책받은 사례이다. 2008년 모건 스탠리는 피터슨을 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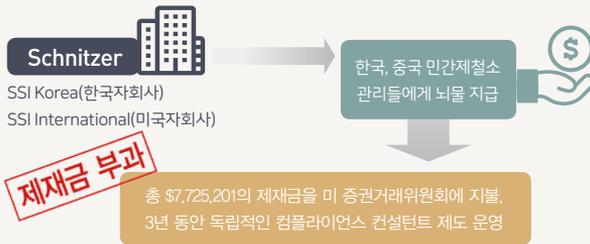
표 FCPA 적용되어 조치 받았던 우리 기업 관련 예: SSI KOREA와 IBM KOREA



Schnitzer는 제철, 금속 재활용 사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의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운영하는 미국 오리건주 기반의 회사이다. 금속 재활용 사업의 일부로서, Schnitzer는 아시아에 있는 제철소에 고철을 팔기 위하여 1995년 두 개의 자회사를 인수하였다. 한국에 있는

SSI International Far East Ltd. (SSI Korea)이며, Washington의 Tacoma에 있는 미국 자회사는 SSI International, Inc. (SSI International)이다. 이 자회사들은 아시아에서 고철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Schnitzer는 중국에 있는 국영 제철소의 관리자들에게 현금으로 뇌물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Schnitzer로부터 고철을 사도록 만들었다. Schnitzer는 또한 중국과 한국에 있는 민간 제철소의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지급하고, 회계장부 및 기록에는 이러한 지급을 부적절하게 숨겼다.

▶ **조치결과:** Schnitzer는 환수금 \$6,279,095, 이자 \$1,446,106를 합해 총 \$7,725,201의 제재금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급할 것에 합의하였고, 3년 동안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Compliance Consultant)를 보유 및 운영을 요구하였다.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는 Schnitzer의 정책 및 절차가 FCPA 위반 여부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3년의 자문 동안,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는 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Schnitzer, Commission staff, 그리고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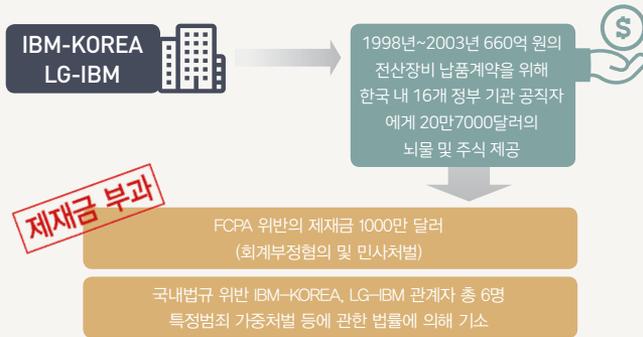




IBM-KOREA와 LG-IBM(엘지전자와 합작사로 1996년 IBM KOREA가 51%, LG 전자가 49%의 지분으로 설립한 회사이다.)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60억 원 규모의 전산장비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국 내 16개 정부 기관(국세청(3명), 정보통신부(5명), 육군·해군(각 1명)

등 관공서와 한국전력공사, 새마을금고연합회, KBS, KT(각 1명) 등 공공기관 공직자에게 모두 20만7000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 뇌물 수수자들은 담합행위를 목인해 주고 기종 및 용량 결정, 예산 배정, 기술평가 등에 있어 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주는 한편,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로는 현금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을 준비 중이던 회사의 주식도 제공되었다. 또한, 한국IBM에서는 대형서버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로비자금, 담합 대가 지급, 영업비 등에 사용하였다. 로비자금으로 3억 6,300만 원, 담합 대가 지급에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IBM에서 LG-IBM(주)에 로비자금 2억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 **조치결과:** 2011년 3월, IBM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채, FCPA의 회계조항 위반의 혐의로 부당이익 530만 달러, 이자 270만 달러, 민사처벌로 200만 달러 등 총 1000만 달러(약 112억 원)의 제재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합의를 제출했다. 한국에서는 납품과정에서 관공서 및 공기업의 전산 담당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IBM-KOREA 관계자 3명과 LG-IBM 관계자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1999년 뇌물방지협약을 발효하여, 모든 가입국들에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부패의 '주는 측면'을 규제하는 국제법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이른바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 협약 이후, OECD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은 업데이트된 협약사항들을 각국의 관련 법규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였고, 자국 내 관련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각국의 법규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3년 10월에 <제9차>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보고서를 통해 부패방지협약 참가한 40개국의 시행 현황을 공표하였음.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의 나라들이 외국에서 뇌물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독일과 영국,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부패방지협약을 이행한다고 나타났음.

부패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별 분류는 4그룹 <적극 이행, 보통 이행, 제한된 이행, 이행이 거의 없는 국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행이 거의 없는 국가로 구분되었음.

- (1) 적극 이행 :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 전 세계 수출의 24.2% 차지
- (2) 보통 이행 :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 전 세계 수출의 6.1% 차지
- (3) 제한된 이행 :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불가리아 ▶ 전 세계 수출의 11.3% 차지
- (4)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 :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아일랜드, 폴란드, 터키, 체코 공화국, 룩셈부르크, 칠레,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 전 세계수출의 26.9% 차지

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른 주요 국가별 조치사례	
해외	우리나라
<p><스위스 Panalpina 사례> 원유 시추장비 등이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에서 세관 통과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뇌물을 약 2,700만 달러 상당을 제공</p> <p>▶ 2010년 11월, Panalpina와 관련 회사(6개 에너지 회사)는 FCPA 위반에 따라 약 2억 3,650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 합의</p>	<p><주한미군 관련 뇌물 공여 사례 > ○○사 대표이사 ○○○이 2002. 3월~ 12월까지 8회에 걸쳐 주한 미군 물품 납품을 위한 공개입찰에 다른 회사의 응찰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납품 담당 미군에게 2001. 10월~2003. 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2,505만 원의 뇌물 공여</p> <p>▶ 2004. 5월 ○○○ 벌금 500만 원 및 법인 벌금 500만 원</p>
<p><일본 JGC 사례> 일본 대형플랜트 엔지니어링사 JGC는 미국 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나이지리아에 액화천연가스공장을 건립하면서 나이지리아 공무원에 뇌물을 준 것이 2011. 4월 미국 검찰에 적발</p> <p>▶ 2억 2,000만 달러의 제재합의금 지불</p>	<p><중국세관 공무원 관련 뇌물 공여 사례> ○○상인회 임원들인 '갑', '을', '병'이 공모하여 통관편의 목적으로 2005. 1월~2006. 2월 중국세관 공무원에게 22회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p> <p>▶ 2008. 6월 '갑' 벌금 200만 원, '을'과 '병' 벌금 100만 원</p>

표 2014년 OECD 해외뇌물보고서(Foreign Bribery Report) 주요 내용

해외뇌물 보고서 주요 내용

- 해외뇌물 사건의 59%가 인프라 관련 4개 분야에서 발생
 - 채굴(19%), 건설(15%), 운송·물류(15%), 정보·통신(10%)
- 뇌물을 공여·허가한 직원의 41%가 관리직,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12%
- 가장 빈번히 뇌물 제공을 수여하는 대상은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 직원(27%)
 - 여타 세관 공무원(11%), 보건 공무원(7%), 국방 공무원(6%) 등
- 3건 중 1건은 회사나 개인의 보고로 인해 당국이 인지
 - 법 집행 당국이 직접 조사를 개시(13%)하거나, 국가 간 공식·비공식 형사사법 공조 차원에서 발견(13%)
 - 내부고발자(2%)나 언론보도(5%)를 통한 사건 조사는 희소
- 자체 보고한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감사(31%), 인수·합병 시 실사 과정(28%)에서 해외뇌물 사건을 적발
- 해외뇌물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 80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그 밖의 3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총 261건의 벌금형 부과
 - 단일 회사 상대로 부과된 최고 벌금액(누적)은 총 18억 유로
 - 개인에 대한 최대 금전적 처벌은 1억 4천 9백만 불(USD) 상당의 몰수 명령
- 사건의 68%는 각국법상 합의(settlement) 방식으로 처벌
 - 기업 보호관찰(캐나다), 합의형벌제도(이탈리아), 벌칙 경고장(노르웨이), 형법상 배상(스위스), 불기소합의(NPAs), 기소유예합의(DPAs), 형사합의(미국) 등

UN 반부패협약



UN 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서는 부패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패 행위에 대한 각국 정부의 범죄 규정, 뇌물·횡령·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 채택, 부패 지원이나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행위의 범죄 명시, 정치 지도자가 수탈한 국가 자산의 차기 정부 환수 규정 명문화 등’으로 목록화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부패 행위’는 협약서 <제3장 범죄화와 법 집행>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자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외국 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 영향력에 의한 거래, 직권남용, 부정축재, 민간부문의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재산 횡령, 범죄 수익의 세탁, 은닉, 사법 방해, 법인의 책임, 참가와 미수, 범죄 구성요소로서 인식·고의와 목적 등이다.

G20, 2010년 반부패행동계획 채택과 2017~2018 반부패행동계획서 승인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G20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므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의 가입 및 비준(批准)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G20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 등의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의 제정 및 이행,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효과적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민간부문의 국제 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반부패 민간 파트너십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선언문을 통해, G20 정상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투명성·포용성 제고를 위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제도에 대한 무허점, 행동에 대한 무장벽을 이행하는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을 승인하였다.

특히, 행동 계획서에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도난당한 자산의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영국, 뇌물법(2010)과 이행지침서



2011.7.1.부터 시행된 영국의 뇌물법은 미국의 FCPA와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아직 영국 뇌물법(Bribery Act)의 실제 적용 사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영국계 기업의 옥시 사태도 있었으나, 아직 영국의 뇌물법에 따른 조치사항이 국내에 알려진 바 없다.

영국의 뇌물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종개인, 자회사 또는 국외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간의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뇌물수수 행위가 적발되면 제한 없는 벌금에 최고 징역 10년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런던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약 3만7360원)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선물의 제공자나 물품명, 가격 등을 28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부패 범죄의 경우, 중대경제범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수사한다.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큰 특징은 내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충분한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뇌물법은 규정에 의거 기업이 직원, 대리인, 자회사 등 관계자의 뇌물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2011. 3. 30.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와 검찰청(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DPP) 그리고 중대경제범죄수사청(SFO)은 부패방지법의 적용에 관한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지침은 뇌물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준법감시 절차(adequate procedure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침은 매우 중요한 이행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영국, 뇌물법의 양벌규정 적용 관련 이행지침서의 주요 내용(요약)

- 기업은 우선 부패방지 방침과 윤리 행동강령 등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진의 뇌물에 대한 무관용 의지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 그 다음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Due diligence) 실행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서 부패 및 뇌물과 관련 리스크를 파악, 분석하고 그 리스크에 비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부패 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패와 뇌물의 발생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 감사 및 검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유사시 소송 등에서 이를 적절히 제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 이러한 반부패 활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업은 부패와 뇌물 리스크 관리 대상을 임직원은 물론 고객, 협력회사, 대리인, 중개인, 파트너 및 컨소시엄 등으로 확대해야 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관계자들과의 접점 및 세부 프로젝트 수준에서도 그 리스크를 파악, 분석하여 관련한 '사업 관계자' 리스크도 합리적으로 저감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국 표준화 기구(BSI), BS 10500(2011) 가이드라인



2011년 영국 표준화 기구(BSI)는 뇌물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 BS 10500을 제정하였다. BS 10500은 뇌물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경영시스템 요건들을 규정한 영국의 국가표준(British Standard)의 가이드라인이다.

BS 10500의 공식 명칭은 '뇌물방지경영시스템(ABMS)을 위한 요건: Specification for an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이며, 영국 국가표준 기관이자 ISO의 창립 간사기관인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이하, BSI)가 제정하였다.

BS 10500의 제정 배경에는 뇌물법과 이행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 영국 기업들과 비즈니스 조직들의 요구가 중요했다. 뇌물법 시행 및 이행지침 공표이후, 많은 기업 및 비즈니스 조직들은 뇌물 예방의 실행력과 구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의 세부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즉, 해당 법규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절차'에 관한 요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기업 및 관련 조직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경영시스템의 표준을 요구한 것이다.

BSI Anti-bribery Working Group에 따르면, “BS 10500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표준이나, 특별히 영국기업들이 뇌물법의 법적 요구사항들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으로 경영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Working Group의 Stansbury 의장은 “BS 10500이 모든 국가의 뇌물제공 관련 법률이나 반부패 관련 국제법의 내용을 충족하는 세부적인 이행사항들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영국 부패방지법과 이행지침의 ‘적절한 절차’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제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BS 10500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적절하게 실행할 경우, 이는 뇌물법에서 언급한 적절한 뇌물 예방 절차가 실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로서 의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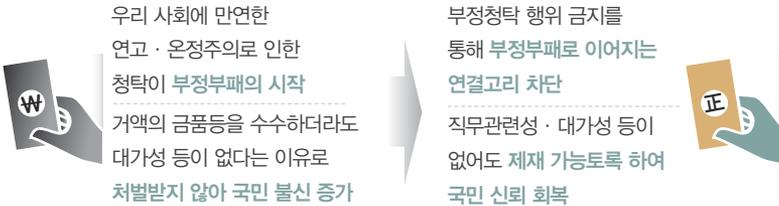
이에 BSI는 이러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영국 국가표준인 BS 10500을 제정하였다. BS 10500의 제정은 뇌물법과 이행지침에서 제시한 적절한 절차 및 6가지 이행 원칙을 조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표준 경영시스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청탁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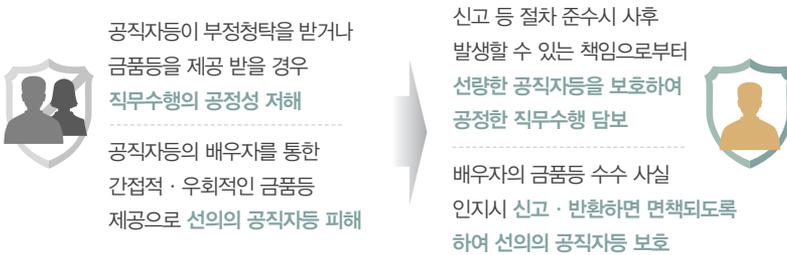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은 그림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청탁 금지법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강제 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등이 부정청탁 및 뇌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처리 프로세스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의를 공직자등의 보호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은 제1조(목적)에서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뇌물 및 부정청탁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등을 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에서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민간영역에서) 청탁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또는 주고자 했을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이외에 그가 소속한 기관/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양벌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반부패 가이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9. 시행된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적용 관련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으로써 2016.12.에 '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청탁금지법의 효과적인 준수를 위해 이행 기관은 '계획-실행-평가-환류'의 경영시스템 일반에 기초한 추진단계별 전략이 필요하고, 가이드에서는 반부패를 위한 전략으로써 '계획 수립 - 규범 마련 - 실행 - 협력 - 평가와 개선'의 5가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 '계획 수립'은 장 단기적으로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반부패 활동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 '규범 마련'은 구성원들이 반부패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요령 및 기준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계를 말한다. ▲ '실행'은 마련된 규범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부패 방지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이고, ▲ '협력'은 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자회사, 협력사, 시민단체 등과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 '평가와 개선'은 기업이 부패 방지를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성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단계이다.

1. ISO 37001(2016) 가이드라인의 참고문헌

ISO 37001(2016) 가이드라인의 '개요'에서 ISO 37001(2016)은 다른 ISO 관련 기준서들과 함께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관련 ISO 기준서로는 ISO 19600(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 지침), ISO 14001(환경 경영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ISO 37100(리스크관리 - 원칙과 지침) 등이 있다.

아래 [표]는 ISO 37001(2016) 가이드라인 제정 시 준용한 참고문헌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의 모범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지침을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하고 있다.

ISO 37001(2016)의 참고문헌 명시는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법규법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만이 아니라 경영관리 시스템적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관련 주제 영역의 하나인 부패방지 관련 주제를 글로벌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필요시 권위가 있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준서 제시 방식과는 다른 장점이다.

표 ISO 36001(2016) 참고문헌	
[1] ISO 9000, Quality management system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1]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과 용어
[2]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2]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 요구사항
[3] ISO 19011, Guidelines for auditing management systems	[3] ISO 19011, 경영시스템 심사를 위한 지침
[4]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4]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5] ISO/IEC 17000,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5]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6] ISO 19600,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6] ISO 19600,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 지침
[7]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any organization in the food chain	[7]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사슬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8]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8]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9] ISO/IEC 2700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9] ISO/IEC 2700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 요구사항

<p>[10]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p>	<p>[10] ISO 31000, 리스크관리 – 원칙 및 지침</p>
<p>[11] ISO Guide 73, Risk management – Vocabulary</p>	<p>[11] ISO Guide 73, 리스크관리 – 용어</p>
<p>[12] ISO/IEC Guide 2,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p>	<p>[12] ISO/IEC Guide 2, 표준화 및 관련 활동 – 일반 용어</p>
<p>[13] BS 10500, Specification for an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p>	<p>[13] BS 10500,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 요구사항</p>
<p>[14]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New York, 2004. Available at: http://www.unodc.org/documents/treaties/UNCAC/Publications/Convention/08-50026_E.pdf</p>	<p>[14]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 뉴욕, 2004</p>
<p>[1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Paris, 2010</p>	<p>[15] 경제 협력 개발기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및 관련 문서, 파리, 2010</p>
<p>[1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aris, 2010</p>	<p>[16] 경제 협력 개발기구, 내부 통제, 윤리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모범사례, 파리, 2010</p>
<p>[1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mmentaries on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21 November 1997</p>	<p>[17] 경제 협력 개발기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해설, 1997. 11. 21</p>
<p>[18]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ransparency International, Reporting guidance on the 10th principle against corruption, 2009</p>	<p>[18] 유엔 글로벌 콤팩트 /국제 투명성 기구,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제 10 대 원칙에 관한 보고서, 2009</p>
<p>[19]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ransparency International,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World Economic Forum, RESIST: Resisting Extortion and Solicit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 company tool for employee training, 2010</p>	<p>[19] 국제 상공 회의소, 국제 투명성기구, 유엔 글로벌 콤팩트 및 세계 경제 포럼, RESIST : 국제 거래에서의 강요 및 유도에 대한 저항, 직원 교육용 기업 자료, 2010</p>

[2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Rules on Combating Corruption, Paris, 2011	[20] 국제 상공 회의소, 뇌물수수방지 규정, 파리, '2011
[21] Transparency International,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and associated tools, Berlin, 2013	[21] 국제 투명성 기구, 뇌물수수 및 관련 도구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원칙, 베를린, '2013
[22]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2] 국제 투명성 기구, 부패인식지수
[23] Transparency International, Bribe Payers Index	[23] 국제 투명성 기구, 뇌물 공여 지수
[24]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4] 세계은행, 국가 관리 지수
[25]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ICGN Statement and Guidance on Anti-Corruption Practices, London, 2009	[25] 국제 기업 지배 구조 네트워크, ICGN 성명 및 뇌물수수방지 실천 지침, 런던, '2009
[26] World Economic Forum, 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An Initiative of the World Economic Forum in Partnership with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the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Geneva	[26] 세계 경제 포럼, 뇌물수수 대응을 위한 뇌물수수 원칙 방지 협력, 국제 투명성기구 및 바젤 국가경영 연구소 제휴 세계 경제 포럼 이니셔티브, 제네바
[27] Committee of the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May 2013	[27] 트레이드웨이 위원회 후원 조직 위원회 : 내부 통제 – 통합 프레임 워크, '2013. 5



국민권익위원회